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479

발의연월일 : 2020. 11. 18.

발 의 자:이병훈·민홍철·박완주

신영대 · 신정훈 · 유정주

민형배 • 이상헌 • 이장섭

전재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과 법인에게 이전후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세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실적은 공공기관에 비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법인세의 전액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그 다음 5년간은 소득세 또는법인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하여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6년"을 "9년"으로, "4년"을 "6년"으로, "다음 3년"을 "다음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년"을 "9년"으로, "4년"을 "6년"으로, "다음 3년"을 "다음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
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	세액감면) ①
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	
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	
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	
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	
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	
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하여 <u>2020년 12월 31일</u> 까지	<u>2021년 12월 31일</u>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	
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	
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 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 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 권정비계획법 1 제6조제1항제2 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 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 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⑥ (생 략)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 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

<u>9년</u>
<u>6</u>
<u>년</u>
<u>다음 5년</u>
<u>3년</u>
<u>100분의 80</u>
,
② ~ ⑥ (현행과 같음)
∥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
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
우 법인세 등 감면) ①

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 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 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 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 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3 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 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20년 12월 31일까 지 보유하고 2020년 12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 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

1. (현행과 같음)
2
<u>2021년 12월 3</u>
1일
<u>2024</u>
<u>년 12월 31일</u>
<u>2021년 12월 31일</u>
<u>2021년 12월 31</u>
<u>일</u>

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 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 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 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 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 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

②
<u>9</u>
<u>년</u>
<u>6년</u>
<u>다음 5년</u>
<u>3년</u>
<u>100</u> 분

 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의 80-----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① (생략)
 ③ ~ ① (현행과 같음)